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6호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현재 장수명 주택 인증을 통해 용적률·건폐율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인증등급은 최우수·우수등급이며, 최우수등급의 경우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우수등급의 경우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나 최우수·우수 등급을 획득한 사례가 없는 상황으로, 우수등급의 경우에도 양호등급과 20점의 차이가 있어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수등급 기준을 낮추어 건설사의 등급 상향 달성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우수·우수등급 기준 완화(안 별표3)

- 1) 최우수등급 점수기준을 현행 90점 이상에서 80점 이상으로, 우수 등급 점수기준을 현행 8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완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3] 인증등급별 점수기준(제5조제3항 관련)

등급	표시	심사점수	비고
최우수	★★★★★	80점 이상	100점 만점
우수	★★★	70점 이상	
양호	★★	60점 이상	
일반	★	50점 이상	